

- 유언 공증 시 구비서류 -

구 분	구 비 서 류	비 고
유 언 자	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	유언을 하는 사람
수 증 자	주민등록등본	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을 사람
유언집행자	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	유언자 사망 후 유언내용을 실행할 사람으로 수증자를 제외한 가족, 친척, 제3자 누구라도 가능 * 증인 중 1명이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음.
증인 2명	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	유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신고를 받은자, 유언에 대하여 이익을 받을자, 유언자와 8촌이내 가족, 친족, 인척은 제외 * 이해관계 없는 친구 등 타인이 가장 좋음
유언목적물		토지 :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토지대장 건물 :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 아파트 :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: 통장원본(현재시점까지 통장정리)
※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,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나오게 발급할 것		
공증 당일 참석자 (유언자, 증인2명)	★ 신분증, 도장 ★ 반드시 지참 !	유언공증은 대리출석이 불가능하므로 공증 당일 유언자와 증인 2명 모두 직접 출석하여야 함.
< 서류발급기관 > - 가족관계증명서 / 주민등록등본 : 주민센터(동사무소)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/ 토지·건축물대장 : 등기소, 구청 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: 가정법원,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(광주가정법원 : ☎062-608-1200,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) ◆ 인터넷 발급 사이트 (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, 정부24, 인터넷등기소, 전자후견등기시스템)		
※ 유의사항 ※ 상기에 기재된 서류를 빠짐없이 전부 구비하시어 먼저 서류만 본 법무법인에 접수하시면, 서류검토와 신원조회가 완료된 다음 공증일자 및 시간을 예약 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방문하시면 유언공증이 진행됩니다. (서류는 한 분이 오셔서 접수 해주시고, 접수 당일에는 공증 진행 할 수 없습니다) * 공증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, 공증수수료는 목적물 총 합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. - 문의 : 공증팀 (062-381-0050) - 주차 : 영효 주차타워 (상무중앙로78번길 5-6)		